

우송대학교 직무발명규정

제 정 2007. 9.
개 정 2017. 1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우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직원이 창작한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교직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특허법 제2조제1호의 발명
 - 나. 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의 고안
2. “직무발명”이란, 교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의 재직 중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10.17.)
3. “자유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 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 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 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
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대학의 교원·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출원유보”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승계) ① 교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및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에 의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직원이 교직원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는 교직원이 갖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해당지분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발명의 신고 및 승계여부의 통지

제4조 (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대학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교직원이 공동으로 한 발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양도증【별지 제2호 서식】
3. 발명의 내용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
4. 선행기술 조사서(외국 출원의 경우에 한함)【별지 제4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 산학협력단은 즉시 그 발명신고서에 수령일자를 가입하고 날인한 후 사본을 발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 및 승계여부의 통지) ① 산학협력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별표1】의 발명평가기준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승계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4월 이내에 그 발명을 한 교직원과 소속 대학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별지 제5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승계시점 등) ① 산학협력단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산학협력단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을 한 교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 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 (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문서【별지 제6호 서식】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 신청한 발명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그 이유와 함께 이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과 소속 대학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별지 제7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발명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자유발명의 양도) ① 발명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 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에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에 의해 발명을 승계한 경우, 본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제3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9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약간명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산학협력단의 특허업무 책임자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
3. 직무발명의 출원(해외출원 포함), 등록 여부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
5. 제13조제4상의 규정에 따른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여부
6.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실시하여·기술이전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7.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양수 여부
8.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지급기준·산정방식·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9. 본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0. 기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출원 및 비용부담

제13조 (출원 등) 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체없이 특허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와 소속 대학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별지 제8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발명자와 소속 대학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별지 제8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 (비용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인 경우 당해 과제 관련규정 또는 별도 약정이 있는 때는 그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과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무에 관해서는 그 발명에 대한 지분 및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5장 보 상

- 제15조 (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출원보상금 : 직무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2. 등록보상금 :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3. 실시·처분보상금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직접실시, 양도 또는 실시하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4. 출원유보 보상금 :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취하·포기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보상금에 상당하는 승진·승급·연수 등의 비금전적 보상을 고려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산정방식·지급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발명진흥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 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공동발명자의 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그 직무 발명의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 제17조 (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상)** ①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②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권리가 특허법 제33조제1항의 본문 규정에 의한 이유로 무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보 칙

- 제19조 (비밀유지의무)**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

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및 제2항의 규정은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이 대학을 퇴직.졸업.수료.자퇴 또는 퇴학(이하 “퇴직 등”이라 한다)한 후에도 적용한다.

제20조 (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때 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손해배상) 발명자가 제4조제1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산학협력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협력의무) 발명자는 출원.심사.심판.소송.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퇴직 등 후의 취급) 교직원이 퇴직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급은 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 (준용 및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권리 및 이외의 신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교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교직원의 신고가 있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권리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 |
|------|---------|
|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
| 접수자 | 직위: |
| | 성명: (인) |

| 발명 신고서 | | | | |
|--|--|-------|-------------------------------|------|
| 발명의 명칭 | 한글 : 영문 : | | | |
| 발명자 | 성명 | 지분(%) | 소속 | 전화번호 |
| | 한글 : | | | |
| | 영문 : | | | |
| | 한글 : | | | |
| | 영문 : | | | |
| | 한글 : | | | |
| 영문 : | | | | |
| 관련연구과제 및 자금지원 | 연구과제명 | | 지원기관 | 연구기관 |
| 출원 희망국 | | | | |
| 발명의 공개여부 및 계획 | <input type="checkbox"/> 논문발표 <input type="checkbox"/> 학술지 게재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발표일 : 년 월 일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사본] | | | |
| 발명의 종류 | <input type="checkbox"/> 직무발명 | | <input type="checkbox"/> 자유발명 | |
| 발명의 현단계 | ①아이디어단계 ②연구개발진행중 ③연구개발완료 ④시제품제작중 ⑤시제품 테스트결과 기술실현성 입증 | | | |
| 사업화를 위한 추가연구의 필요성 여부 | <input type="checkbox"/> YES | | <input type="checkbox"/> NO | |
| 사업화 가능분야(구체적으로) | | | | |
|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 1. | | 2. | |
| 연구노트의 관리여부 및 소재 | <input type="checkbox"/> YES() | | <input type="checkbox"/> NO | |
| 본 발명과 관련된 특허 (특허, 논문, 시장정보) 키워드 | | | | |
| 위의 발명을 우송대학교직무발명규정 제4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고(대표)자: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p> | | | | |

[별지 제2호 서식]

| 양 도 증 (지분 표시) | | | | | |
|---|-----|------------|--------|---|-----|
| 발명의 명 칭 | | | | | |
| 출원번호 (등록번호) | | | | | 지분율 |
| 양 도 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
| 기 타 | | | | | |
| 양 수 인 | 성 명 | 우송대학교산학협력단 | 단 장 | | |
| | 주 소 | | | | |
| <p>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권리를 우송대학교 직무발명규정 제4조에 따라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p> | | | | | |

[별지 제3호 서식]

| 발명 설명서(명세서) -1 | |
|-----------------------|--|
| 1. 발명의 명칭 (한글, 영문) | |
|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
| 3.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 【발명의 목적】 3.1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3.2 그 분야 종래기술의 설명 및 문제점 3.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발명의 목적) |

[별지 제4호 서식]

| 선행기술 조사서 | | |
|---------------------------|------------------------------|---------------------------------|
| 제출자(발명자) | | 접수번호 |
| 발명의 명칭 | | 제출일자 |
| 1. 선행기술과의 대비 | | |
| 기존 특허 (제목, 특허번호, 출원일자) | 본 발명 대비 신규성 (어떤 점이 새로운가?) | 본 발명 대비 진보성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
| | | |
| | | |
| | | |
| | | |
| 2. 관련자료(참고문헌, 학회지 등) | | |
| 문헌명, 저자, 페이지 등 | 기술 요약 | 참고문헌과 비교시 본발명의 특징 |
| | | |
| | | |

[별지 제5호 서식]

| | |
|--|--------------------------|
| 심사결과 통지서 | |
| 문서(접수)번호 | |
| 수신(발명자) | |
| 발명의 명칭 | |
| 제 목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통지 |
| 우송대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5조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결 정 사 항 | |
| 1. 직무발명 여부 | |
| 2. 회사의 승계 여부 | |
| 3. 특허성의 등급결정 | |
| 4. 국내외 출원여부 | |
| 5. 출원시 심사청구여부 | |
| 6. 기타 | |
| 20 년 월 일 우송대학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 | |

[별지 제7호 서식]

| 이의신청결정 통지서 | |
|--|---------------------|
| 문서번호 | |
| 수 신 | |
| 발명의 명칭 | |
| 제 목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의신청결과 통지 |
| 우송대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7조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결정 사항 | |
| 1. 신청 이유(요약) | |
| 2. 결정 내용 | |
| 20 년 월 일 우송대학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 | |

[별지 제8호 서식]

| 출원 통지서 | | | |
|---|--|-------|--|
| 문서번호 | | | |
| 수 신 | | | |
| 발명의 명칭 | | | |
| 발 명 자 | | | |
| 우송대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13조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출원여부 등을 통지합니다. | | | |
| 권리 내용 | | | |
| 출원 여부 | | | |
| 출원 일자 | | 출원 번호 | |
| 미출원 이유 | | | |
| 20 년 월 일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 | | | |
| 첨부 : 출원명세서 | | | |